[사 건 명] 행심 2018 - 6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Ⅰ. 사건개요

가. 2017. 10. 26. 청구인이 타학교 학생 ◈◈◈(피해학생)에게 "얘 개대물임"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하였는데, 청구인은 곧바로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낸 메시지라며 사과를 했으나, ◈◈◈는 자신과 청구인 학생이 성관계를 맺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며 그러한 성희롱적인 문자 내용에 대해 기분 나쁘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문자를 보낸 친구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이에 청구인은 가상인물인 '●●●'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며, 위 ●●●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 학생에게 알렸다.

나. 이에 ◈◈◈ 학생은 청구인이 다니는 학교에 직접 확인을 하여 ●●●이 가상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에게 이에 관하여 추궁하자 청구인은 본인이 보낸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는 위와 같은 청구인이 보낸 문자내용은 자신과 성관계를 맺으라는 성희롱적 발언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여 학교폭력 신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의 학교에서 2018. 11. 28.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의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1. 30.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9. 본 건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구를 가리켜 '크게 될 놈이다'라는 뜻으로 단체대화방에 "애 개 대물임"이라고 작성해야 할 메시지를 바로 밑에 위치했던 피해학생과의 대화방에 잘못 입력하여 메시지가 전송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애초부터 피해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 또한 전혀 없었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였고, 순간적으로 청구인은 당황하고 부끄러워 자신의 친구가 보낸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거짓말은 악의적인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라. 청구인과 피해학생만 있는 대화방에서 '애'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문맥상 맞지 않고, 메시지 내용은 다중적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여 음란한 정보인지도 불확실하므로 청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음란정보 등을 전송하여 피해학생에게 정신상 피해를 준 것이라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과의 대화방이 단체대화방 바로 밑에 위치한다는 증거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은 확인시켜줄 수 없다고 하였던 점 및 자주 사용하는 대화방은 상위에 올라오게 되지만, 피해학생과의 대화가 평소 이루어지지 않아 하단으로 내려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단체대화방 바로 밑에 ◈◈◈ 학생과의 대화방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새로 시작하는 대화방은 이전 대화내용이 표기되지 않아 이전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피해학생과 새로 시작하는 대화방에 “애 개 대물임” 이라는 내용을 처음으로 썼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실수가 맞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피해학생의 모든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수로 문자를 보냈다고 한 2018. 10. 26.(목) 오후 6:15 이후에 같은 날 오후 11:30에 피해학생과 나눈 성적인 메시지 대화내용을 고려해 볼 때 실수로 보낸 메시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이 사건 처분 결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지 않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 및 피청구인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 학생과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되었으며, 고등학교 때에는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고 한달 평균 2~3번 정도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 도서관도 함께 가기도 하는 사이인데, 청구인이 2018. 10. 26.(목) 오후 6:15경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 학생에게 '얘 개 대물임'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는데, 이에 ◈◈◈ 학생은 이러한 문자 내용의 의미를 청구인과 성관계를 맺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따져 묻자, 청구인은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구인 '●●●'(가상인물)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며, ●●●이 그러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에게 알렸다.

(2) 이후 ◈◈◈는 청구인에게 반드시 사과를 받겠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학교에 직접 연락을 하여 위 '●●●'이 청구인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지 확인을 하였으나, 결국 위 '●●●'은 청구인이 지어낸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는 위 문자 메시지는 청구인이 보냈다는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 받고, 위와 같은 청구인이 보낸 문자내용은 자신과 성관계를 맺으라는 성희롱적 발언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여 학교폭력 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학교에서 2018. 11. 28.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학생에게 보낸 '얘 개 대물임'이라는 문자 내용과 관련하여, ◈◈◈ 학생은 위 표현의 문자내용을 보는 순간 자신과 청구인이 성관계를 맺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청구인에게 곧바로 알렸음에도, 이러한 문자를 받은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낸 문자가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크게 될 인물 혹은 사람'(본 건 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은 '대물'이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첫째는 친구들끼리는 사용하는 의미로 '앞으로 크게 될 놈'이라는 뜻과 둘째는 '남자의 성기가 매우 크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진술하였음)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은 하지 않고 오히려 위 ◈◈◈ 학생이 받아들인 의미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 문자는 자신이 올린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친구가 올렸다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으며, 그러한 대화 과정에서도 ◈◈◈ 학생은 위 문자를 받은 이후 일관되게 그러한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기분이 나빠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겠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넘기겠다고 이야기 한 점 및 당시 청구인이 ◈◈◈ 학생에게 위 문자를 전송한 이후의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보았을 때 청구인도 위 문자의 의미에 대해 ◈◈◈ 학생이 받아들이는 의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로 인지하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청구인이 위 문자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정보등(성희롱적인 발언 내지 표현)에 의하여 ◈◈◈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위 문자는 원래 청구인을 포함한 10명의 친구들이 대화 당사자로 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생들)에 친구인 ▣▣▣을 지칭하여 위 문자를 보내려고 하였는데 실수로 위 단체대화방 바로 밑에 있는 ◈◈◈ 학생에게 전송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위와 같은 실수가 있었

다면 청구인이 곧바로 ▤생들 대화방에 그러한 취지의 문자를 올린다거나 혹은 ◈◈◈ 학생에게 곧바로 실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어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일반적일 것이나 청구인은 ▤생들 대화방에 ◈◈◈ 학생에게 문자를 잘못 보냈다는 내용의 문자대화 내용이나 ◈◈◈ 학생에게 엠생들 대화방에 올릴 문자가 잘못 전송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곧바로 보내지 않았던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심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나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